

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(시설기준) 및 제37조(영업허가 등)를 위반한 업소(영업자가 사실상 폐업을 하고 폐업 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)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(허가취소 등)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(영업허가 취소)에 앞서, 같은 법 제81조(청문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(처분사전통지)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, 등기 우편물이 반송 되는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6년 7월 27일

하 동 군


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 : 영업허가 취소
2. 공고기간 : 2016. 7. 28. ~ 8. 22.
3. 청문일자 및 장소 : 2016. 8. 23.(화), 14:00 하동군 보건소 2층 소회의실
4. 업소 및 위반사항 내역

업 종	영업자	업소명	소재지	위반사항	의견제출 기 한
유흥주점	강정애	그린룸	하동군 금성면 금성중앙길 34	영업자가 사실상 폐업을 하고(사업자 등록폐업-10.6.30) 폐업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.	'16.8.23(화) 14:00까지

5. 관련법규 :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, 같은 법 제75조
6. 유의사항
 -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일시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(허가취소 등)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(영업허가 취소)됨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7. 본 처분에 대한 문의 : 하동군 보건소 안전위생(☎ 담당자 장성훈 055-880-2352)